

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거선

성별 남성

(나이) 19세

직종)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작업자

직업관련성 낮음

1. 개요

근로자는 2019년 1월 21일에 □사업장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프레스 절단, C가 공 작업을 수행하였다. 입사 6주 후인 2019년 3월 16일에 전신 피부에 홍반성 발진이 발 생하여 로컬 피부과에서 상세불명의 건선,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, 두드러기 등으로 5 회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었다. 2019년 8월 26일부터는 대학병원에서 상세불명 의 건선,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으로 진료받았으며 전신에 홍반성 비늘 모양의 판이 관 찰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. 20세가 되던 2019년 9월 9일 조직검사에서는 건선 소견 관찰 되었다. 근로자는 □사업장에서 절삭유를 제거하기 위해 에어컴프레서를 사용하면서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였고. 이 과정에서 물질이 피부 및 정신에 튀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0 년 2월 4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

2. 작업화경

□사업장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이다. 근로자는 입사한 초기 볼트 체결 방 식의 단품 조립 업무를 12일 정도 수행한 이후 약 6개월간 프레스 절단 작업을 하였 고. 프레스 작업이 없는 경우 수평 드릴로 횡으로 구멍을 뚫는 가공작업도 병행한 것 으로 파악 되었다. 사업장에서 제출한 MSDS에 따르면 가공작업 시 취급하고 있는 화 학물질은 윤활유, 유압유, 방청유 등의 금속 가공유로 확인되었다.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작업 중 작업복 2벌을 지급받아 이틀에 한 번 세탁하며 착용하였고, 마스크, 팔토시, 앞치마 등을 지급받아 사용했다고 한다. 공장 내부는 기온이 급격히 상승한 상태에서 기계에서 방출되는 열로 매우 무더운 작업환경이었으며, 별도의 냉각 시설 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땀으로 보호구가 젖을 정도였고 반팔을 입고 작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. 사업장에서는 MCT 가공 및 프레스 절단 작업 시 방진마스크, 안 전화, 귀마개, 투명 비닐장갑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방진마스크는 직원들이 잘 착용하 지 않는다고 하였다. 공장 내 환기는 창문 등을 통한 자연환기와 MCT설비 등에 국소 배기 장치가 설치되어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.

II. 암 외 질환 다. 기타 질환 74 75

3. 해부학적 분류

- 피부 질환

4.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5.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입사 6주 후인 2019년 3월 16일에 전신 피부에 홍반성 발진이 발생하여 피 부과의워 에서 상세불명의 건선,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, 두드러기 등으로 5회 진료 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었다. 2019년 8월 26일부터는 대학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건 선,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으로 진료받았다. 증상으로 소양감, 통증, 및 분비물에 대 해 호소하였고, 전신에(두피 포함) 21% 이상의 홍반성 비늘 모양의 판이 관찰되었다. 항핵항체 검사에서는 음성 소견을 보였다. 20세가 되던 2019년 9월 9일 조직검사에서 건선 소견을 보였고, 전신에 병변이 분포하였다. 경구 항히스타민과 항알러지약을 처 방받았고 광선치료를 시행하였다.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2019년 11월 14일 타 대학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방문하여 기타 유기용제 독성 효과와 부상병 상세불명의 앨러 지로 수진하였다. 2019년 11월 업무를 중단한 이후 증상은 일부 호전되었으나 피부 병 변과 가려움증이 남아있는 상태이었다. 근로자는 그 밖에 관절 근력 약화를 주장하 며, 2019년 7월경에는 손과 팔에 경련 증상도 있었다고 주장하였다. 2021년 1월 부터 는 증상이 재발하여 현재 몸통의 앞과 뒤, 발목과 종아리 뒤 부위에 발진이 있다. 근로 자는 현재 용접과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신너 등에 노출되고 있다고 진술 하였고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이다. 근로자는 2남 1녀 중 둘째로 형제 모두 알레르기 비 염이 있지만 아토피나 건선 가족력은 없었다.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 두 달에 소주 하 병 정도 마신다고 진술 하였다.

6. 고찰 및 결론

근로자(남, 1999년생)는 만 20세가 되던 입사 6주 후인 2019년 3월에 전신 피부에 홍반성 발진 발생하였고, 2019년 9월 조직검사를 통해 건선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2019년 1월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프레스 절단, C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.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물질은 없다. 근로자는 근무 중 프레스 절단 및 C가공 작업을 하는 동안 금속가공유와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.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으로는 근로자가 노출된 화학물질과 상병과의 연관성의 근거는 부족하다.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. 끝